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88 발의연월일: 2025. 4. 10.

발 의 자:정일영·장종태·박지원

김 윤ㆍ이재관ㆍ이재정

송재봉 • 권향엽 • 김문수

정진욱 • 문금주 • 임미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을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한편, 온라인 인터페이스(Online Interface)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음.

최근 배달플랫폼 등 일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이용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정부는 이러한 사업자들에 대하여 이용수수료의 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자율규제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이용수수료의 상한제를 법률에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플랫폼 이용수수료에 차등을 두어 부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거래에"를 "거래 등에"로, "소비자"를 "소비자 등"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비자와 사업자"를 "소비자와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 한다.

제21조의3을 제21조의4로 하고,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이용수수료율 제한)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경우 연간 매출액(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이하 이 조에서 "영세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한다)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세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20조의3"을 "제20조의3, 제21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제1조(목적)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 -----거래 등에-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 소비자 등_----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 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 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 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 비자와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 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 중개의뢰자-----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이용수수료율 제한) ① 전자상 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 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를 운영하는 경우 연간 매출액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맹점을 소 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가맹 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 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통신판매중개의뢰 자(이하 이 조에서 "영세한 통 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세한 통신 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우대수 수료율은 영세한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 으로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는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 <u>제21조의3</u>(온라인 인터페이스 관 런 자율규약) (생 략)

-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 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
여야 한다.
제21조의4(온라인 인터페이스 관
런 자율규약) (현행 제21조의3
과 같음)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1
<u>제20</u>
<u>조의3, 제21조의3제1항</u>

2. · 3. (생략)

② ~ ④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